

의안번호	제577호
의 결 연 월 일	2012년 12월 일 (제325회)

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정지숙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3년 11월 29일

#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정지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7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3년 11월 29일  
발 의 자 : 정지숙, 김희수, 심기보  
김봉희, 김형근, 임 현  
김도경 의원

## 1. 개정이유

충청북도립교향악단의 발전을 위하여 능력과 실력있는 예술감독을 채용하기 위하여 예술감독의 겸직금지조항을 삭제하고, 비상임단원의 상임단원화에 따라 비상임단원을 삭제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악단과 사무국의 설치(안 제2조제2항과 제3항)

나. 단원의 구분(안 제4조)

- 단원은 악장, 수석단원 및 정단원으로 구성
- 지휘자는 예술감독이 겸함.

다. 겸직금지의 변경(안제12조제1항)

- 예술감독의 겸직금지 삭제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와 협의함.

다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해당 없음.

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##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2조(구성) ① 충청북도립교향악단(이하 “교향악단”이라 한다)의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단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.
- ② 교향악단에는 악단과 사무국을 둔다.
- ③ 악단은 연주를 담당하며, 사무국은 사무처리 등을 담당한다.
- ④ 교향악단의 정원은 45명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단원과 사무직원(이하“직원”이라 한다)”을 “악단원(이하 “단원”이라 한다)과 사무국직원(이하“직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④ 지휘자는 단원의 기량 연마와 공연기획·제작 등 공연업무를 총괄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4조(단원의 구분) ① 단원은 악장, 수석단원 및 정단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지휘자는 예술감독이 겸한다.

제5조제3항 본문 중 “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”을 “단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위촉과 단원의 평정”을 “단원의 위촉과 평정”로 한다.

제9조 제목을 “(위촉기간 및 연령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촉연령은 만 58세 이하로 한다.

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단원과 직원은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 충청북도립교향악단(이하 “교향악단”이라 한다)의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단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.</p> <p>② 교향악단에는 사무처리 등을 담당할 사무국을 둔다.</p> <p>③ 교향악단의 정원은 45명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2조(구성) ① 충청북도립교향악단(이하 “교향악단”이라 한다)의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단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.</p> <p>② 교향악단에는 악단과 사무국을 둔다.</p> <p>③ 악단은 연주를 담당하며, 사무국은 사무처리 등을 담당한다.</p> <p>④ 교향악단의 정원은 45명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<p>제3조(단장 등의 직무) ① 단장은 교향악단을 대표하며,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을 총괄하고 단원과 사무직원(이하 “직원”이라 한다)을 지휘·감독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④ 지휘자는 단원의 기량 연마와 공연기획·제작 등 공연업무를 총괄하며, 지휘자와 예술감독은 겸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3조(단장 등의 직무) ① 단장은 교향악단을 대표하며,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명을 받아 교향악단을 총괄하고 악단원(이하 “단원”이라 한다)과 사무국직원(이하 “직원”이라 한다)을 지휘·감독한다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지휘자는 단원의 기량 연마와 공연기획·제작 등 공연업무를 총괄한다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단원의 구분) ① 단원은 예술감독,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상임단원은 공연에 출연하는 상시</p>	<p>제4조(단원의 구분) ① 단원은 악장, 수석단원 및 정단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지휘자는 예술감독이 겸한다.</p>

<p>근무자를 말한다.</p> <p>③ 비상임단원은 주 3일 이상 근무하며 연주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제5조(자격과 위촉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은 음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량을 갖춘 자 중 공개전형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. 다만, 국·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④ 도지사는 예술분야의 식견이 풍부하고 교향악단 운영과 관련한 능력이 있는 자를 직원으로 위촉한다.</p> <p>⑤ 도지사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무국장으로 위촉한다.</p> <p>제6조(전형위원회) ①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의 위촉과 단원의 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9조(위촉기간) ① ~ ② (생략)</p> <p>(신설)</p>	<p>제5조(자격과 위촉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단원은 음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량을 갖춘 자 중 공개전형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. 다만, 국·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④ (현행 제⑤항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 제④항과 같음)</p> <p>제6조(전형위원회) ① 단원의 위촉과 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9조(위촉기간 및 연령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위촉연령은 만 58세 이하로 한다.</p>
---	--

<p>제12조(겸직금지 및 복무 등) ① 예술감독, 상임단원, 직원은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 다만,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12조(겸직금지 및 복무 등) ① 단원과 직원은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

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지방자치법

**제22조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